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13
----------	------

발의연월일 : 2024. 6. 27.

발의자 : 김선민 · 신장식 · 한창민
박은정 · 차규근 · 정춘생
김준형 · 서왕진 · 이해민
김재원 · 김윤 · 장종태
조국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간에는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금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지급 제도는 연금급여 이외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과보장을 예방하고 급여액의 조정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음.

그러나 소득활동을 이유로 노령연금액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고령화 시대에 은퇴자 및 고령자의 근로유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으며, 최근 외국의 경우에도 고령자 근로유인 제고 등을 이유로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 제도를 폐지해 나가는 추세임.

이에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제도를 1년간 유지 후 폐지

하도록 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자의 취업유인을 제고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삭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지급 폐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득활동에 따라 노령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노령연금액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액)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에는 제62조 제2항·제4항, 제63조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p> <p>1. 초과소득월액(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월액에서 제51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 초과소득월액의 1천분의 50</p> <p>2.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p>	<p><u><삭 제></u></p>

상 200만원 미만인 사람: 5만
원 + (초과소득월액 - 100만
원) × 1천분의 100

3.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
상 300만원 미만인 사람: 15
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
만원) × 1천분의 150

4. 초과소득월액이 300만원 이
상 400만원 미만인 사람: 30
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
만원) × 1천분의 200

5. 초과소득월액이 400만원 이
상인 사람: 50만원 + (초과소
득월액 - 400만원) × 1천분
의 250